



농업생명과학대학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**이공계 대학원 신입생 안전환경 신규교육 이수 안내 강화 요청**

1. 관련

- 가.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(교육·훈련)
- 나. 서울대학교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 규정 제8조(안전환경교육)

2. 위 법규정에 따라 본교 이공계 대학원 신입생은 입학과 동시에 환경안전원에서 주관하는 안전환경 신규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며, 교육 미이수한 자에 대하여 기관별로 별도의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.

- 가. **제재 조치:** 연구실 출입 제한, 논문제출자격시험 응시 불가 등

3. 특히 일부 대학원생 중 입학 당시 교육을 받지 않고 있다가 졸업 시기에 교육을 이수하려는 자로 인하여 연구실안전 확보 미흡 및 사고 예방에 문제를 야기 함은 물론 **교육 이수를 하지 못하여 논문제출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**

4. 각 기관에서는 안전환경 신규교육 시즌에 대학원 신입생 모두가 입학과 동시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 안내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**교육 시기:** 매년 2월, 8월
- 나. **교육 신청:** 연구안전통합정보시스템-안전교육(rsis.snu.ac.kr)
- 다. **이수 처리:** 교육 이수 후 온라인이수증 발급

라. 특이 사항

- 1) 신규교육은 2일간 집합교육으로 시행해 왔으나, **현재 코로라바이러스감염증-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및 국가기관 교육지침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강좌로 대체 실시하고 있음**
- 2) 본교 대학원 과정 수료자 중 **대학원연구생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연구안전통합정보 시스템 상 신규교육 신청 및 교육 이수가** 가능하게 됨(「서울대학교 외부연구자 및 실습참여자 안전관리 지침」 시행일(2021.3.15.) 부터 적용)
- 3) 「서울대학교 외부연구자 및 실습참여자 안전관리 지침」 제7조(교육·훈련 의무)에 따른 **본교에 등록 되지 않은 연구생 대상의 신규교육(2시간)은 본 신규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음**

끝.

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장



수신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업생명과학정보원, 농업생명과학대학식물생산과학부장, 농업생명과학대학 산림과학부장, 농업생명과학대학식품·동물생명공학부장, 농업생명과학대학바이오시스템·소재학부장, 농업생명과학대학응용생물화학부장, 농업생명과학대학조경·지역시스템공학부장, 농업생명과학대학농경제사회학부장, 농업생명과학대학농생명공학부장, 농업생명과학대학농산업교육과장, 농업생명과학대학협동과정농업생물공학전공주임, 농생명과학창업지원센터장, 바이오시스템공학과장, 농림생물자원학부장, 서울대학교식품바이오융합연구소장,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장, 농업생명과학대학식물병원장, 식물유전체육종연구소장, 식물면역연구센터장

직원 **이응훈**

사무팀장

2021.7.22.

전결

김정자

협조자

시행 농업생명과학대학-21214 (2021.7.22.)

접수 ()

우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

/

전화 02-880-4515

전송

/ leh0330@snu.ac.kr

/ 공개